

〈의안번호 제37호〉

2007. 10. 15(월) 10:00

제1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2007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  
총무위원회 소관 예산(안)  
검 토 보 고 서

총무위원회  
전문위원 배성한

<의안번호 제2007- 37호>

2007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안중  
총무위원회 소관 예산(안)  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10. 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. 10. 2.

2.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(군전체)

가. 총괄 - (예산안 설명서 P1)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	증감율
계	294,265,160	276,092,260	18,172,900	6.6%
일반회계	247,683,472	235,466,236	12,217,236	5.2
특별회계	46,581,688	40,626,024	5,955,664	14.7

-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81억 7,290만원이 증액(6.6%)된 2,942억 6,516만원임.
  -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22억 1,723만 6천원이 증액(5.2%)된 2,476억 8,347만 2천원이며,
  -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59억 5,566만 4천원이 증액(14.7%)된 465억 8,168만 8천원임.

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- (예산안 설명서 P5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	
계	247,683,472	235,466,236	12,217,236	5.2%	
자체수입	지방세수입	12,982,976	11,746,908	1,236,068	10.5
	세외 수입	24,079,758	23,766,058	313,700	1.3
의존수입	지방교부세	122,514,490	115,810,940	6,703,550	5.8
	조정교부금 (재정보전금)	4,415,000	4,415,000	0	-
	국고보조금	58,507,519	58,708,235	△200,716	0.3
	도비보조금	25,183,729	21,019,095	4,164,634	19.8

다. 특별회계 세입예산(공기업 제외) - (예산안 설명서 P24)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추경예산안	기정예산액 (1회 추경)	증 감	증감율
계	24,516,043	21,250,379	3,265,664	15.4%
세외수입	10,867,848	10,804,184	63,664	0.6%
국고보조금	13,268,395	10,408,395	2,860,000	27.5%
도비보조금	379,800	37,800	342,000	904.8%

라.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- 예산설명서(P53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증감율
총무위원회	128,581,237	125,154,650	3,426,587	2.7
의회사무과	885,629	881,679	3,950	0.4
기획감사실	14,382,588	13,776,328	606,260	4.4
종합민원실	920,803	917,553	3,250	0.4
행 정 과	36,595,872	36,574,875	20,997	0.1
재 무 과	2,524,157	2,335,417	188,740	8.1
주민생활지원과	679,312	771,156	△91,844	△11.9
사회복지과	31,046,330	31,123,352	△77,022	△0.2
문화관광과	19,660,327	18,040,927	1,619,400	9.0
전략사업추진단	7,450,244	6,264,482	1,185,762	18.9
보 건 소	4,740,824	4,828,790	△87,966	△1.8
교육문화센터	1,638,361	1,629,511	8,850	0.5
수송대관리사무소	250,544	249,644	900	0.4
읍 면	7,806,246	7,760,936	45,310	0.6

○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2,658만 7천원 이 증액(2.7%)된 1,285억 8,123만 7천원임.

-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

의사운영 395만원, 기획관리 6억626만원, 세정관리 1억8,874만원, 문화 예술관리 15억5,560만원, 인구정책 4,05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, 주민생활 △9,184만4천원, 사회보장 △7,702만2천원, 보건행정 △8,796 만6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음.

### 3. 검토의견

#### 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(설명서 P57)

- ◇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,950천원(0.4%)이 증액된 8억 8,5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-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#### 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(설명서 P61~64)

-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2만 6천원(4.4%)이 증액된 143억 8,25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#### ◇ 의정비 책정 지역주민 여론 수렴 : 5,000천원 (설명서 p62)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6항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'0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앞서,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업비임. 어디에 민간위탁 하는지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.

#### ◇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: 400,000천원(설명서 p63)

#### ◇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 : 100,000천원(설명서 p63)

-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수요 발생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풀 사업비로 편성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연말까지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, 향후 신중한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함.

#### 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(설명서 P67)

- ◇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만원(0.4%)이 증액된 9억 2,08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-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## ■ 행정과 소관 예산(설명서 P71~74)

- 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,099만 7천원(0.1%)이 증액된 365억 9,58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◇ 한마음 한 뿌리 출향인의 날 행사 : △20,000천원 (설명서 p72)

◇ 미국 및 캐나다와 교류사업 추진 : △9,295천원 (설명서 p72)

◇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: △10,000천원 (설명서 p72)

◇ 국외 자매결연단체 초청 : △30,000천원 (설명서 p72)

-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는 예산 집행없이 당초 편성한 예산 그대로 삭감 조치하고 있음.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## ■ 재무과 소관 예산(설명서 P77~79)

-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,874만원(8.1%)이 증액된 25억 2,41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◇ 청사 지하 리모델링 공사 : 144,952천원 (설명서 p79)

- 체력단련실의 이용이 부진하고, 습기가 차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아 쾌적한 환경조성과 직원 휴게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## 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(설명서 P83~86)

-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,184만 4천원(△11.9%)이 감액된 6억 7,93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◇ 수급자 생계비급여(3,614명) : △141,617천원 (설명서 p84)

-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법정급여의 적극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국도비가 삭감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것임. 국도비 삭감 변경 내시된 사유 설명이 필요함.

## 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(설명서 P89~94)

-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,702만 2천원( $\Delta 0.2\%$ )이 감액된 310억 4,6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### ◇ 거창군 삶의 쉼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: 88,181천 원(설명서 p89)

-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인 거창군 삶의 쉼터가 12월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32조 및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비용을 예산 편성한 것임.

### ◇ 일반보상금 : $\Delta 322,380$ 천 원 (설명서 p93, 94)

- 장애수당, 장애아동부양수당, 장애인자녀학비 등 국고보조사업인 국비가 삭감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삭감한 것임. 국비 삭감 변경 내시된 사유 설명이 필요함.

## 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(설명서 P97~101)

-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,940만원(9.0%)이 증액된 196억 6,03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### ◇ 감악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, 재해, 교통영향 평가공고 : $\Delta 9,000$ 천원 (설명서 p97)

-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주민공람·공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에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.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계획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.

◇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: 100,000천원 (설명서 p97)

- 제19회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기간은 2007. 7. 27 ~ 8. 15(20일간)이며, 경상남도에서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시기는 2007. 8. 9(군 접수 8.10)임.
- 지방재정법 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경우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
-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기간중인 2007. 8. 15까지는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미집행 되었으므로, 미 집행된 도비보조금은 재원의 내역을 변경(예 → 군비 1억원 삭감, 도비 1억원 증액)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재원의 내역 변경없이 도비 1억원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.
-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의 내역 변경없이 예산 1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편성된 도비 추가지원액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며, 또한 집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◇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: 100,000천원 (설명서 p99)

-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인 갈계마을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 시설비로 1억원이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비 정산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임.

◇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: 900,000천원 (설명서 p99)

- 그 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.

◇ 거창스포츠 파크조성 사업 : 500,000천원 (설명서 p100)

-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임.

◇ 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방안 용역

: 63,800천원 (설명서 p101)

- 지방재정법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07. 7. 24. 군의회 주례회의 시에 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방안 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.
-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“수승대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(86,000천원)” 를 2007. 7. 31일 “수승대 관광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 저감방안 용역비” 로 선 집행하였음.
-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음에도 선 집행한 내역의 용역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■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(설명서 P105~108)

-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,576만 2천원(18.9%) 이 증액된 74억 5,02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◇ 전입대학생 장학금(전입장려금) 지원 : 35,000천원 (설명서 p105)

-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0조제6호의 규정에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입장려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입장려금을 편성하는 것임.

◇ 초중고 육성지원 : 750,000천원 (설명서 p108)

◇ 전문대 육성지원(국제어학원) : 200,000천원 (설명서 p108)

-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초중고 및 전문대 육성지원에 9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■ 보건소 소관 예산(설명서 P111~114)

-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,796만 6천원(△1.8%)이 감액된 47억 4,08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◇ 출산장려금 : △111,000천원 (설명서 p112)

- 2007년 8월 1일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정시 출산장려금을 일부 감하고, 사회복지과에서 보육료를 신설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출산 장려금을 일부 삭감하는 것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■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(설명서 P117~118)

- ◇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85만원(0.5%)이 증액된 16억 3,83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-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

■ 수송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(설명서 P121)

- ◇ 수송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0만원(0.4%)이 증액된 2억 5,05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-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.